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[시행 2025. 1. 1.] [조례 제2072호, 2024. 4. 2., 일부개정]

경기도 파주시(복지정책과), 031-940-4554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가보훈 기본법」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파주시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13. 12. 30)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(개정 2013. 12. 30)

- 1. "희생·공헌자"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 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- 가.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
- 나.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
- 다.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
- 라.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
- 2. "국가보훈대상자"란 희생·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.
- 3. "보훈단체"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.
- 4. "국가보훈관계 법령"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.
- 제3조(예우 및 지원대상자)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파주시(이하 "시"라 한다)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로 한다.(개정 2020.6.12)
 - 1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(신설 2020.6.12)
 - 2. 「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(개정 2013. 12. 30)(제1호에서 호이동 및 개정 2020.6.12)
 - 3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(신설 2020.6.12)
 - 4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(개정 2013. 12. 30)(제2호에서 호이동 및 개정 2020.6.12)
 - 5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(개정 2013. 12. 30)(제3호에서 호이동 및 개정 2020.6.12)
 - 6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(제4호에서 호이동 및 개정 2020.6.12)
 - 7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 <제5호에서 호이동 및 개정 2020.6.12, 개정 2021.11.12>

제4조(책무)

- ① 시는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.
- ② 시민은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.
- **제5조(공훈선양사업 추진 등)** 파주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나라사랑정신 선양과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 - 1. 국경일 등 행사에서의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와 국가유공자의 우선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
 - 2.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
 - 3.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·관리
 - 4.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로 및 격려
 - 5. 그 밖에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는 사업

제6조(보훈단체 예산지원)

- ① 시장은 보훈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
- 1. 회원의 권익신장과 단체운영에 필요한 예산
- 2. 호국·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행사 및 독립운동발상지 등 전적지 순례
- 3. 자원봉사 사업 및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
- 4. 그 밖에 시장이 단체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예산
- ② 제1항의 예산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예산의 신청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「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규정을 준용한다. (개정 2014.12.30)

제7조(복지 및 생업지원)

- ① 시장은 관계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국가유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.
- 1. 시가 설치·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, 이용료 및 사용료 등의 감면
- 2.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문 및 조문
- 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지원
- ② 시장은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16조의2 및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68조의 2에 따라 시가 설치·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독립유공자·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자 할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반영할 수 있으며, 신청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은「파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<개정 2024.4.2.>

제8조(보훈명예수당 등)

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(이하 "수당"이라 한다)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, 제3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(이하 "참전유공자"라 한다)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위로금(이하 "배우자 위로금"이라 한다)을 지급할 수 있다.<개정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

2020.6.12., 2021.3.16., 2021.11.12., 2024.4.2.>

- 1. 수당: 월 10만원
- 2. 사망위로금: 15만원
- 3. 배우자 위로금: 연1회 20만원
- ② 시장은 80세 이상의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1회 참전특별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.(항 신설 2019.10.04.)(개정 2020.6.12)
- ③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. (개정 2013. 12. 30, 제2항에서 이동 2019.10.04, 개정 및 단서 삭제 2020.6.12)
- ④ 전입자의 경우 전입일이 속하는 달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. (제3항에서 이동 2019.10.04.)
- ⑤ 배우자 위로금은 지급일 현재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한다.<신설 2021.3.16>
- ⑥ 제1항제1호 수당과 제1항제3호 배우자 위로금은 중복 지급할 수 없다.<신설 2021.3.16>

제9조(수당 등 신청)

-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수당, 사망위로금, 배우자 위로금(이하 "수당 등"이라 한다)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한다. (개정 2018.9.28, 2021.3.16)
- ② 사망위로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, 지급 순위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5조제1항에 따른다.<개정 2013.12.30., 개정 2024.4.2.>

제10조(수당 등 지급결정)

-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수당 등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보훈관서에 확인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. (개정 2013. 12. 30, 2020.6.12)
- ② 시장은 매 분기 국가보훈부에서 국가보훈대상자 명단을 제공받아 수당지급 대상자를 확인하고 읍·면·동장에게 통지하여 수당 지급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.<신설 2020.6.12. 2024.4.2.>

제11조(수당 등 지급방법)

- ① 수당은 매월 20일(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),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(이하 "수급권자"라 한다)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. (개정 2013. 12. 30)
- ② 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수당은 이를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본다.
- ③ 참전특별위로금과 배우자 위로금의 지급 방법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.<신설 2021.3.16>

제12조(수당의 지급중지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.

- 1.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다른 시·군·구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경우
- 2.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

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

제13조(환수조치)

-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.
- 1.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
- 2. 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
- ② 시장은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수당이 과오지급된 경우 사망위로금에서 환수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.
- ③ 삭제(2017.9.22)

제14조(민간의 참여조성) 시장은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에 노력해야 한다.

제15조 <삭제 2024.4.2.>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10. 4.30 조례 제875호)

- 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다른 조례의 개정)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- 1. 제1조 중 " 및 「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」" 및 "그리고 재향군인회"를 삭제한다.
 - 2. 제2조 중 "제3호"를 삭제하고 "제4호"를 "제3호"로 한다.
 - 3. 제4조제3호 중 "·모범재향군인회회원"을 삭제한다.
 - 4. 제5조 중 제명의 "및 군인회"와 제1항 중 " 및 군인회"를 삭제한다.

부칙 (2012.11.9 조례 제1051호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규정)「파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」에 따라 참전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른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로 본다.

제3조(다른 조례의 폐지 및 개정) ①「파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」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.

②「파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」제1조 중 "「한부모가족 지원법」제15조"를 "「한부모가족 지원법」제15조,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제16조의2,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68조의 2"로 하며 제5조 중 "장애인·노인·모자가정의 여성이"를 "장애인·노인·한부모가족과 독립유공자·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중"으로 한다.

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

부칙 (2013.12.30 조례 제1139호)

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14.12.30 조례 제1198호) (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 생략

제4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⑧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6조제2항 중 "「파주시 보조금 관리조례」"를 "「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"로 한다.

부칙 (2017.9.22 조례 제1374호) (파주시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8.9.28 조례 제1445호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) 제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0월 보훈명예수당 지급 시부터 적용한다.

부 칙 (2019.10.04. 조례 제1529호)

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20.6.12. 조례 제1598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21.3.16. 조례 제1680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

부 칙 (2021.11.12. 조례 제1738호)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24. 4. 2. 조례 제2072호)

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